

제 1054 호
1984.12.2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공 보 관 조 남 호
전 화 : 725-7661-9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957 호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	3
제 1958 호 :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개정조례	4
제 1959 호 :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10
제 1960 호 :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	11
제 1961 호 : 서울특별시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2
제 1962 호 :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	13
제 1963 호 :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3

< 이 면 제 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964 호 : 서울특별시지하철도건설법인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4
제 1965 호 : 서울특별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4
제 1966 호 :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 례중 개정조례	15
제 1967 호 : 서울특별시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5
제 1968 호 : 서울특별시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6
제 1969 호 :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6
제 1970 호 : 서울특별시수도권내공단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	17
제 1971 호 :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7
제 1972 호 : 서울특별시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한 재산세불균일과세에 관 한 조례중 개정조례	18
제 1973 호 :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18
제 1974 호 :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면 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19
제 1975 호 :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 례중 개정조례	19
제 1976 호 : 서울특별시통신업에 대한 등록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19
제 1977 호 : 서울특별시가산금징수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20
제 1978 호 : 서울특별시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	20

◎ 고 시

제 815 호 : 서울역-서대문제 2 구역제 5 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	20
제 816 호 : 을지로 2 가구역제 10 지구재개발사업변경인가	21
제 817 호 : 강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22
제 818 호 : 도심지재개발사업제 3 개발자지정고시	23
제 819 호 : 도시계획 (하천) 사업 실시계획인가.....	23

◎ 공 고

제 794 호 : 광화문구역재개발사업완료공고	29
제 809 호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준공	29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957 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 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가.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구분	1 개 월 기 본 요 금		초 과 사 용 료	
	기 본 수 량 (㎡)	기 본 요 금 (원)	사 용 구 분 (㎡)	1 ㎡ 당 단 가 (원)
업종				
일반 1 종	15	300	16-30	36
			31-50	100
			51-100	200
			101-500	300
			501 이상	350
일반 2 종	15	300	16-30	36
			31-50	100
			51 이상	180
일반 3 종	500	230,000	501 이상	800
공 공 용	사용수량 1 ㎡ 당 73 원			
공 중 용	"	"	24 원	
산 업 용	"	"	68 원	
* 일시사용 : 사용량 1 ㎡ 당 200 원				

나.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일 반 1 종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 1 종, 제 3 종, 제 4 종 (안마시술소만 해당) 해당업종 사용자 (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 포함)
일 반 2 종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 2 종 해당업종 사용자 (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 포함)
일 반 3 종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 4 종 해당업종 사용자 (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 포함)
공 공 용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 5 종, 제 6 종 해당업종 사용자 (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 포함)
공 중 용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 7 종 해당업종 사용자 및 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 (상수도 이외의 사용자 포함)
산 업 용	1. 서울특별시 공업용수 급수조례에 의한 공업용수 사용자 2.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자로서 공업배치법 제 14 조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한 사용자 3. 발전소 (상수도 급수량 제외) 4. 콩나물 및 숙주나물 재배업 (상수도급수량 제외)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개정소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958 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등 징수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3 조 및 제 34 조와 하천법 시행규칙 제 26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사력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하천사용료 (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	

용료등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 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 2 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 일 이하인 경우에는 2 분의 1 월로, 15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 월 미만

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 제곱미터 미만의 단위가 있는 경우 0.5 제곱미터 이상은 1 제곱미터로 하고 0.5 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 제곱미터로 한다.

⑤법제 3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3 조 (점용료등의 감면) 서울특별시 시장 (이하 “ 시장 ” 이라 한다) 은 하천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100 %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100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100 %
4.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0 %
5. 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 %

감 면 대 상	감 면 율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 %
7. 농지개량소합이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70 %
8. 기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비율

제 4 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사력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자치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6 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치 아니한다. 다만, 법제 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 (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로 귀속되는 공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 점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이하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6
2. 토지 (하천부지)의 점용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가. 감류농지세 해당농업의 경우 연 (年)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의 감류농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5 나. 을류농지세 해당농업의 경우 연 (年)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 또는 을류농지세 과세표준소득금액의 100분의 15 중 저렴한 금액 다. 벽석부지 및 기타농작물 경작의 경우 연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2.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연 (年)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76. 8.7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발령기까지 조립 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3. 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사력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 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4. 야적장등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3. 하천부속물의 점용	구분란 제 1호에 준한다.

구	분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1. 전 기사업 연액 m^3/sec 당 100,000 원 또는 이톤 마력당 200 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금액 2. 공업용수(화력 발전을 위한 인수포함) <table border="0"> <tr> <td>관경</td><td>25 %이하</td><td>월액</td><td>5,000 원</td></tr> <tr> <td>"</td><td>50 %까지</td><td>"</td><td>20,000</td></tr> <tr> <td>"</td><td>75</td><td>"</td><td>30,000</td></tr> <tr> <td>"</td><td>100</td><td>"</td><td>50,000</td></tr> <tr> <td>"</td><td>200</td><td>"</td><td>60,000</td></tr> <tr> <td>"</td><td>300</td><td>"</td><td>80,000</td></tr> <tr> <td>"</td><td>400</td><td>"</td><td>110,000</td></tr> <tr> <td>"</td><td>500</td><td>"</td><td>140,000</td></tr> <tr> <td>"</td><td>600</td><td>"</td><td>190,000</td></tr> <tr> <td>"</td><td>700</td><td>"</td><td>250,000</td></tr> <tr> <td>"</td><td>800</td><td>"</td><td>300,000</td></tr> </table> 자연취수 및 801 %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 m^3 당 100 원씩 적용, 다만 동일인이 동일지역에서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할 경우 점용료등은 관별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 해당 점용료등 적용 3. 농업용수 0.05 $m^3 \sim 0.5 m^3/sec$ 까지 연액 10,000 원 0.5 m^3/sec 증가시마다 10,000 원 가산 4. 선박의 운항 가. 도선 및 5톤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table border="0"> <tr> <td>○ 갑지 :</td><td>월액 10,000 원</td></tr> <tr> <td>○ 을지 :</td><td>" 5,000 "</td></tr> <tr> <td>○ 병지 :</td><td>" 3,000 "</td></tr> </table> * 5톤이하 여객선은 5톤증가시마다 5톤요금의 반액을 가산 나. 5톤이하 유선 <table border="1"> <thead> <tr> <th>등 급</th><th>동 력 선</th><th>무 동 력 선</th></tr> </thead> <tbody> <tr> <td>갑 지</td><td>월액 50,000 원</td><td>월액 25,000 원</td></tr> <tr> <td>을 지</td><td>" 30,000</td><td>" 15,000</td></tr> <tr> <td>병 지</td><td>" 10,000</td><td>" 5,000</td></tr> </tbody> </table>				관경	25 %이하	월액	5,000 원	"	50 %까지	"	20,000	"	75	"	30,000	"	100	"	50,000	"	200	"	60,000	"	300	"	80,000	"	400	"	110,000	"	500	"	140,000	"	600	"	190,000	"	700	"	250,000	"	800	"	300,000	○ 갑지 :	월액 10,000 원	○ 을지 :	" 5,000 "	○ 병지 :	" 3,000 "	등 급	동 력 선	무 동 력 선	갑 지	월액 50,000 원	월액 25,000 원	을 지	" 30,000	" 15,000	병 지	" 10,000	" 5,000
관경	25 %이하	월액	5,000 원																																																																
"	50 %까지	"	20,000																																																																
"	75	"	30,000																																																																
"	100	"	50,000																																																																
"	200	"	60,000																																																																
"	300	"	80,000																																																																
"	400	"	110,000																																																																
"	500	"	140,000																																																																
"	600	"	190,000																																																																
"	700	"	250,000																																																																
"	800	"	300,000																																																																
○ 갑지 :	월액 10,000 원																																																																		
○ 을지 :	" 5,000 "																																																																		
○ 병지 :	" 3,000 "																																																																		
등 급	동 력 선	무 동 력 선																																																																	
갑 지	월액 50,000 원	월액 25,000 원																																																																	
을 지	" 30,000	" 15,000																																																																	
병 지	" 10,000	" 5,000																																																																	

구 분	산 정 기 준										
	※ 5톤이상의 유선은 매 1톤 증가시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하며 4인승 이하의 소형무동력 보트는 무동력선의 반액으로 한다. 다. 부선(유선장을 제외) 및 골재수송선 <table> <tr> <td>50톤이하</td><td>월액 20,000원</td></tr> <tr> <td>50톤초과 - 100톤</td><td>" 25,000원</td></tr> <tr> <td>100톤초과 - 200톤</td><td>" 35,000원</td></tr> <tr> <td>200톤초과 - 300톤</td><td>" 45,000원</td></tr> <tr> <td>300톤초과 - 400톤</td><td>" 55,000원</td></tr> </table> 400톤초과시는 매 100톤 증가분까지 8,000원씩 가산 라. 가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 고시한다. 5. 기타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기준에 의거 산정	50톤이하	월액 20,000원	50톤초과 - 100톤	" 25,000원	100톤초과 - 200톤	" 35,000원	200톤초과 - 300톤	" 45,000원	300톤초과 - 400톤	" 55,000원
50톤이하	월액 20,000원										
50톤초과 - 100톤	" 25,000원										
100톤초과 - 200톤	" 35,000원										
200톤초과 - 300톤	" 45,000원										
300톤초과 - 400톤	" 55,000원										
5. 지하의 유수채취	구분란 제 4호의 기준에 준한다.										
6. 배수(주수)	1. 공업용수의 배수 월 10,000 m^3 - 월 200,000 m^3까지 월액 20,000원 월 1,000 m^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2. 기타용수의 배수 ○ 양어장, 풀장등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하천법제 25조 제 1항 제 10호).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담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월 10,000 m^3 - 월 200,000 m^3까지 월액 15,000원 월 1,000 m^3 증가시마다 50원 가산										
7. 토석, 사력의 채취	1. 서울특별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사 사력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2. 제 1호의 조사는 공신력있는 2개 이상의 조사기관에 의하여 2개지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당해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 분	산 정 기 준
	시장이 본 산정기준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축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품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은것은 구분란 제 7호 점용이 수반되는것은 구분란 제 2 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9. 스케이트장 (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 (매점포함)	인근토지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10. 다만 제외지등 인근토지 등급적용이 곤란한 경우 45 등급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10. 전 주	구분란 제 1호에 준한다.
11. 기타의 점용 또는 사용	구분란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959 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 (종류 및 요액) 별표중 제 1항 나호 제 4목, 제 2항 가호 제 12목, 나호 제 2목, 제 19목, 제 26목, 제 3항 기호 제 9목을 삭제하고 동조 별표중 제 1항 나호 제

5목, 제 6목, 제 9목, 제 11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제 4항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 관리대장 1건 330원

6) 건축물 관리대장 무한증명 1건 330원

9)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 (환지예정지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1매 330원

11) 건축물 관리대장 및 기타 공부도면의 열람 1회 330원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제 4항 (제 3조관련) 울림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4. 올림픽광고물 인 허가사항 (6 종)

단위 : 원

수 수 료 종 목	기 준	금 액	비 고
1) 시내버스 외부광고 (측면 및 후면)	1 대 당	3,000 (1,500)	()는 갱신수수료 허가수수료시효 : 1년 (기 간내 광고내용 변경 시에는 수수료 면제)
2) 택시표시등 광고	10 대 당	5,000 (2,500)	
3) 환경정화용 대형광고	1 개 당	25,000 (12,500)	
4) 탑광고	1 개 당	20,000 (10,000)	
5) 전광판광고	1 개 당	60,000 (30,00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지방문화재에 대한 시세불균일과
세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960 호

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
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

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특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 를 “ 향토문화
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를 호
울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 로 하
고

제 2 조와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
다.

제 2 조 (불균일 과세 대상) 전조의 불
균일 과세대 상은 다음 각호와 같
다.

1. 문화재 보호법 제 4 조, 제 6 조

제 8 조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
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
정된 주거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제 1 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
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
화재 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제 3 조 (세율) 제 2 조의 불균일 과
세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
세법 제 188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 분의 1.5 로 하고 도시계획세
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 237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 분의 1 로
한다. 다만 전, 담, 과수원, 임야
및 목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
율은 1000 분의 0.5 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
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
세면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
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961 호

서울특별시산업체부설학교에대한시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산업체 부설 학교에 대
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 4 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재개발구역내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962 호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
과세면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면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2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 1 호내지 제 4 호의 경우
에는 새로이 취득한 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사업시행
이전의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
과하는 면적 또는 연면적에 대하
여는 따로이 과세하되 제 1 호의 경
우에는 주거용건축물의 연면적이 85
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그 부속토
지의 면적이 건축면적의 7 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따로이 과세하며 제
5 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취득한 토
지 및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이 종
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하
여는 따로이 과세한다.”로 한다.

부칙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
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963 호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
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과세면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내
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
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개량건축
물 포함)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

세 및 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개발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인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과세권제된 취득세등등록세 및 면허세를 추징한다.”

부칙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법인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964 호

서울특별시지하철도건설법인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법인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지하철도 건설법인”을 “지하철 공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음성나환자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965 호

서울특별시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음성나환자 소유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 조중 “집단촌에 거주하는”을 “집단촌에 정착 또는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2 조 본문을 제2 조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 “주택(건축물 면적이 85제곱미터...)”을 주택(건축

물 연면적이 85제곱미터...)“로 한다.
제 2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나관리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등이 음성나환자의 재확정착을 위하여 부동산을 무상양여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여 등기하는 음성나환자 또는 음성나환자 정착촌 대표자에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 3 조를 제 4 조로 하고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제 2 항중 “음성나환자여부를 확인하여 조사결정하고”를 “과세면제여부를 조사결정하고”로 한다.
제 4 조를 제 5 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966 호

서울특별시 군장성급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967 호

서울특별시상이용사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상이용사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968 호

서울특별시원호대상자의주택및농지취득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원호대상자의 주택 및 농지취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969 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도권내 공단에 대한 시세불균

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970 호

서울특별시수도권내공단에대한시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도권내 공단에 대한
시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1971 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공유수면매립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972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 매립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 중개정
조 례

서울특별시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
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 년 1 월 1 일부터 시
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
고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
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들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 제 1973 호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
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및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 년 1 월 1 일부터 시
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철도건설공유지분 분할등기에 따
른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974 호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
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철도건설공유지분 분할등
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면
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975 호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
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태양열 난방주택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 년 12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통신업에 대한 등록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4 년 12 월 31 일

서울특별시장 염 보 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976 호

서울특별시 통신업에 대한 등록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통신업에 대한 등록세 불
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가산금 징수에 대한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977 호

서울특별시 가산금 징수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서울특별시 가산금 징수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예) 1984년 12월 31일 이전의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은 이조례 폐지 이후에도 이 조례에 의한

가산금을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4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978 호

서울특별시의료보험조합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815 호

서울역-서대문 제2구역 제5지구
재개발사업시행인가

1. 건설부고시 제 368 호 ('73.9.6.)

제 76 호 ('77.4.30) 로 재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722 호 ('84.12.3) 및 동고시 제 232 호 ('84.4.27) 로 사업계획변경결정 및 제 3 개발자 지정된 서울역 - 서대문 제 2 구역 5 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개발법 제 3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거 재개발사업시행 인가하였기 고시한다.

1984.12.31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가. 사업의명칭 : 서울역 - 서대문 제 2 구역 5 지구

나. 시행구역 : 중구순화동 1-6 번지의 26 필지

다. 시행면적 : 4,735.8 m^2

(공공용지 : 631.6 m^2)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영등포구여의도동 12-1

마. 건축계획 (구체적인 건축규모 및 층별용도는 건축허가로 확정한다)

○ 대지면적 : 4,104.2 m^2

○ 건폐율 : 47.7 % (건축면적 : 1,754.3 m^2)

○ 용적율 : 695.2 % (연면적 : 44,592.2 m^2)

○ 층 수 : 지상 21 층, 지하 5 층

○ 주용도 : 업무시설 (부속용도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바. 시행기간 : '84.12.31 - '87.12.31

사.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영등포구 여의도동 12-1

삼도물산(주) 대표 김 만 중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서울특별시고시제 816 호

을지로 2 가 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 사업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332 호 ('79.7.24) 동고시 제 440 호 (81.12.21) 로 사업시행 인가 및 변경 인가한 을지로 2 가 구역 제 10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인가하고 동법제 16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1984.12.31

서울특별시장

가. 변경내용

o 사업시행 기간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사업시행기간	1979.7.24-1984.12.31	1979.7.24-1985.12.31

o 변경사유: 토지소유자와 협의
지연('84.10.15)중앙토지 수용
위원회 수용 재결

◎서울특별시고시제 817 호

강동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강동토지구획정리 사
업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도시계

획법 제 12 조,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 조 권한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구획정리과
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도시정
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31

서울특별시장

가. 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로선명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소로2류11호	8	213.7	대 3- 1	성내동 297	로폭조정 (8 m → 6 m) 신 설
변경	" 2류 11호	8	117	소 2-12	" "	
"	" 3류 19호	6	96.7	대 3- 1	소 2-12	
신설	" 3류 20호	6	45	소 2-16	소 2-15	
"	" 3류 21호	6	40	소 2-15	소 3- 1	
"	" 3류 22호	6	54.8	소 1- 2	소 3-10	
"	" 3류 23호	6	56.5	소 1- 2	소 3-10	
"	" 4류 1호	4	22.2	소 2-16	지구계	
"	" 4류 2호	4	40	소 2-15	중 3- 1	
"	" 4류 3호	4	40	소 2-15	중 3- 1	
"	" 4류 4호	4	42	소 2-11	소 2-12	
"	" 4류 5호	4	50	소 2-11	소 2-12	
"	" 4류 6호	4	40.4	소 2-12	소 3- 9	

구분	로 선 명	폭원(m)	연장(m)	시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4류7호	4	41.2	소 2-9	소 2-8	신 설
"	" 4류8호	4	41	소 2-8	소 2-7	"

나. 도로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도면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818 호

도심지 재개발사업제 3 개발자지정고시

서울특별시 도심지 재개발사업 동자동구역 제2지구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6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제3개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한다.

1984.12.31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가. 제3재개발자 지정고시

- 1) 사업의 명칭 : 동자동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용산구 동자동 14-9, -46, -56, -72, -80, -81, -91, -92, -100, -108, -128, -136, 15-1, 17-2, -4, -6, -8, -16, -17, -18, -19, -20, 18-5, -22, -25, -26, -27, -32, -34, -38, -40, -48, 용산구 동1가 2-15, 9-44 (34 필지)

3) 시행면적 : 10,425.7 m^2

4) 시행자 : 인천직할시 북구 가좌동 180-23

동진제강(주) 대표이사 안 병 화

5) 시행자의 사무소 소재지 :

인천직할시 북구 가좌동 130-28

6) 시행인가 신청기간 : 지정일로부터 1년

◎서울특별시고시제 819 호

도시계획 (하천) 사업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283 호 ('79.6.27) 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하고 같은 고시 제 201 호 ('80.6.7) 로 지적승인 고시한 도시계획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토목과)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31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가. 사업시행지 : 도봉구월계동 471-5 ~ 462 (장월교 - 화랑고가차도) 나. 사업의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하천), 우이천제방 축조 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라. 사업규모 : 하천폭 40 m 길이 750 m 마.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 별첨 (생략)	바. 착공 및 준공예정 : '85.2-'85.11.30.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명세 : 별첨토지조서 아.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명 : 별첨토지 조서 첨부 : 토지 및 건물조서 1 부.
---	--

토 지 조 서

(우이천하류제방공사)

소재지지번	지 목	지 적	현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월계동 47-33	답	278	278	성북장위동 230-35	전 병 순
" 58-3	답	110	110	성북장위동 106	최 장 춘
" 56-3	대	22	22	성북장위동 61-6	안 길 용
" 57-1	전	208	208	성북성북동 58-17	추 중 영
" 56-2	대	2	2	성북장위동 61-6	안 결 용
" 53-3	천	459	459	강남청담동 336-8	강 태 원
" 52	천	48	48	해청아파트 11 동 210	
" 52-1	천	42	42	"	강 태 원
" 54-20	대	43	43	"	"
" 54-13	대	137	137	성북석관 261-6	홍 우 택
" 54-27	대	7	7	영등포문래동 4 가 31-35	이 상 길
" 53-1	하천	209	209	"	"
" 54-22	대	44	44	강남청담동 336-8	강 태 원
" 54-23	대	71	71	해청아파트 11 동 210	
" 54-15	대	33	33	종로사직 75	김 광 회
" 54-24	대	12	12	월계동 54-6	조 창 호
				"	"
				"	김승수의 1 인

소재지지번	지 목	지 적	면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월계동 489-21	대	2	2	월계동 489-54	김 원 한
" 54-17	대	5	5	" 54-6	김승수와 1인
" 53-2	천	91	91	강남청담동 336-8	강 태 원
				해정아파트 11 동 210	
" 54-16	대	103	103	월계동 54-6	김승수와 1인
" 54-14	대	41	41	동대문전농동 495	최 기 남
" 54-10	대	24	24	종로구부담동 275	민 춘 강
" 54-8	대	88	88	월계동 64-2	장 명 희
" 54-18	대	24	24	"	"
" 489-22	하천	108	108	월계동 486-23	안 치 수
" 488-11	전	5	5	" 487-23	"
" 489-8	대	132	132	종로경운동 66-7	김 봉 화
" 54-9	대	116	116	종로부암동 275	민 춘 강
" 488-10	전	40	40	월계동 487-23	안 치 수
" 490-4	대	378	378	성동마장동 331-2	두 전 균
				범우아파트 1 동 313	
" 490-5	대	416	416	"	"
" 491-3	전	855	855	동대문회경동 192-	박 도 현
" 495-32	잡	66	66	부산시중구대청동 2 가 30	박 시 준
" 68-123	도로	104	104	종로수하 107-2	서 정 덕
" 68-113	대	47	47	월계동 68-18	김 정 식
" 47-38	답	110	110	성북장위 230-35	전 병 순
" 58-5	답	173	173	성북장위 106	최 장 춘
" 50-1	대	684	684	중구쌍림동 239-5	박 경 린
" 51-1	대	41	41	"	"
" 50-12	대	223	223	"	"
" 50-19	대	115	115	"	"
" 51-32	대	66	66	"	"
" 51-28	대	212	212	"	"

소재지지번	지 목	지 적	현입면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월계동 50-10	대	305	305	중구쌍림동 239-5	박 경 린
" 56-4	대	188	188	성북장위 61-6	안 결 용
" 57-3	대	190	190	성북성북 58-17	추 중 영
" 52-4	천	6	6	강남청담 336-8	강 태 원
" 50-2	천	18	18	해정아파트 11 동 210 호	
" 50-8	천	59	59	마포구대흥동 332-19	"
" 50-11	대	85	85	"	"
" 50-6	도로	6	6	중구쌍림동 239-5	박 경 린
" 50-7	도로	17	17	동대문휘경동 192-1	박 도 현
" 51-34	대	12	12	"	"
" 51-31	대	116	116	"	"
" 56-1	대	4	4	성북장위 61-6	안 결 용
" 51-3	전	415	415	동대문휘경동 192-1	박 도 현
" 51-30	대	5	5	월계동 51-7	이 세 영
" 50-23	답	142	142	동대문전농동 115-7	박 도 현
" 492-3	전	667	667	동대문휘경동 192-1	"
" 50-14	답	255	255	동대문전농동 115-7	"
" 491-5	전	147	147	동대문휘경동 192-1	"
" 495-30	대	35	35	월계동 495-15	김 진 욱
" 495-31	대	10	10	종로명륜동 3 가 320	양 재 인
" 495-34	잡	229	229	부산시 중구대청동 2 가 30	박 시 준
" 478-3	대	33	33	종로구연지동 255	최 근 용
성북장위 30-29	대	21	21	성북장위 30-1	강 수 원
" 25-141	대	5	5	종로연지동 255	임원욱외 1 인
" 25-143	대	15	15	성북장위 25-88	김 일 성
" 25-144	대	24	24	" 25-95	전 순 작
" 25-142	대	3	3	종로연지동 255	김원욱외 1 인
" 25-145	대	5	5	성북장위 75-60	남 상 숙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입면적	소유자 주소성명	
				관계인 주소성명	
성북장위 25-146	대	2	2	동작구신대방동 366-47	김 규 일
월계동 47-31	철도	236	236	동대문구전농동 167-7	윤 완 식
" 47-27	답	1,069	1,069	장위동 23-35	전 병 순
" 47-34	답	90	90	"	"
" 47-35	답	203	203	"	"
" 47-36	답	102	102	"	"
" 47-37	답	855	855	"	"
" 47-39	답	232	232	"	"
" 47-40	답	67	67	"	"
" 47-32	철도	151	151	전농동 167-7	윤 완 식
" 50-9	하천	330	330	대흥동 332-19	강 태 원
" 50-21	"	115	115	"	"
" 50-22	답	726	726	전농동 115-7	박 도 현
" 52-2	하천	587	587	해청아파트 11 동 210	강 태 원
" 52-3	"	341	341	"	"
" 52-5	"	295	295	"	"
" 53-4	"	75	75	"	"
" 53-5	"	30	30	"	"
" 54-28	대	16	16	종로구부암동 275	민 춘 강
" 54-29	대	72	72	"	"
" 56-6	대	44	44	장위동 61-6	안 결 용
" 57-2	전	719	719	성북동 58-17	추 중 영
" 58-4	답	350	350	장위동 106	최 장 춘
" 490-8	대	490	490	범우아파트 1 동 313	사 전 균
" 491-4	전	531	531	휘경동 192-1	박 도 현
" 492-8	전	68	68	"	"
" 495-33	잡종	444	444	부산시중구대청동 2 가 30	박 시 준

평 사 저 축 건 물 내 역									
위 치	용 도	구 조	지 하	1 층	2 층	제 (㎡)	개략천거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관계인 주소 성명
								도봉구공릉동 517-32	김오태
월계1동 495-15	주 택	연와조, 세멘 와즐		69.39		69.39	2.0	중구쌍림동 239-5	박경린
" 50-1,2	주 택 창 고	연와조; 세멘와 즐, 세멘부록조, 스레트즐		182.91		182.91	130	월계동 54-6	조양호
" 54-6	주 택	연와조, 세멘 와즐	6.58	58.51		65.09	65.09	월계동 68-18	김경식
" 68-18	주 택	연와조, 스라브	39.80	39.80	39.80	119.40	4.72	월계동 54-6	김원봉
" 54-8	"	세멘부록조, 세 멘와즐		30.94		30.94	30.94	월계동 54-6	김승수
" 54-7	"	"	6.61	55.8		62.41	62.41	성북구장위동 270-37	박병노
장위동 270-37	주택,접포 사무실	연와조, 스라브	16.63	104.93	104.93	226.46	36	성북구장위동 270-46	김진문
" 270-46	주 택	연와조, 세멘기와	13.29	66.78		80.07	5	" 25-19	김광윤
" 25-79	"	연와조, 세멘와즐	11.17	55.44		66.61	2.5	서대문북기좌동 131-13	김복임
" 25-72	"	"	11.17	55.44		66.61	5.5	성북구장위동 25-49	김봉수
" 25-49	주 택	연와조, 세멘와즐	12.03	37.42		48.45	24	성북구장위동 25-14	황세환
" 25-48	"	"					10	도봉구공릉동 517-32	김오태
" 25-14	"	"	11.87	64.63		76.50	11		
" 25-7	"	"	13.72	53.39		69.39	5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794 호

광화문구역재개발사업완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제 127 호 (77.4.27) 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된 광화문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12.29

서울특별시장

공 략 개 요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동 149 번지 일대
2. 사업의 명칭 : 광화문구역 재개발사업
3. 사업시행인가근거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7 호 (77.4.27)
4. 시행자주소, 성명
 - 주소 : 종로구 종로 1 가 1-1
 - 성명 : 대한교육보험(주)
 대표이사 이 도 선
5. 준공면적
 - 가. 토 지
 - 대 지 : 9,008 m^2
 - 계 : 9,008 m^2
 - 나. 건 물

- 건축면적 : 3,867.77 m^2 (37.77%)
 - 연면적 : 95,069.79 m^2 (679.32%)
 - 층 수 : 지상 22 층, 지하 3 층
 - 용 도 :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6. 준공내역 : 준공내역서 및 확정측량 성과도 참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제 809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준공

1. 서울특별시 고시제 412 호 (83.8.8) 로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된 동작구 상도동 213-1 외 4 필지 상도종합소매시장 신축공사가 준공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85 조 및 제 57 조의 2, 동법 시행령 제 66 조 3 및 제 6 조, 권한위임결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4.12.29

서울특별시장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13-1 외 4 필지
-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 〃 명칭 : 상도종합소매시장

다. 사업규모

- 대지면적 : 3,192 m^2
- 건축면적 : 1,126 m^2
- 건축연면적 : 3,451 m^2
(지하 1층, 지상 2층)

라. 사업시행자 : 강남구 방배동 756-6

(주)일호유통 대표이사 김 욱

마. 사업의착수 및 준공

- 착 공 : 83. 9. 9
- 준 공 : 84. 9.30

사 령

© 1984년 12월 31일자 령제 491 호

내 무 국 이 문 제
지 방 부 이 사 관지하철공사 편견근무를 명함.
(85.1.5-86.1.4)

© 1985년 1월 1일자

령제 493 호

도 봉 구 방 학 2 동

지 방 행 정 서 기 보

서 창 선

충남 논산군 전출을 명함.

© 1984년 12월 31일자

령제 494 호

김 재 형

지방별정직 6급상당에 임함.

9호봉을 급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 1985년 1월 1일자

령제 495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호 봉	직 급
이 강 근	서울시립대학 근무를 명함	1호봉	지방학예연구사시보

령제 496 호

성 명	발 령 부 서	직 급	현 부 서	직 급
김 영 자	종로구보건소	지방보건지원보시보 (행정)	종로구보건소	지방간호보조원
한 계 욱	"	"	"	"
김 행 자	중구보건소	"	중구보건소	"
이 윤 욱	"	"	"	"
김 동 희	용산구보건소	"	용산구보건소	"

성명	발령부서	직급	현부서	직급
박상숙	용산구보건소	지방보건지원보시보 (행정)	용산구보건소	지방간호보조원
김정순	"	"	"	"
최기주	성북구보건소	"	성동구보건소	"
김은숙	"	"	"	"
정민영	"	"	"	"
원경숙	"	"	"	"
노영임	동대문구보건소	"	동대문구보건소	"
윤용암	"	"	"	"
오경숙	"	"	"	"
배옥희	"	"	"	"
강미향	"	"	"	"
이순화	성북구보건소	"	성북구보건소	"
김경숙	"	"	"	"
기현숙	"	"	"	"
박란숙	"	"	"	"
윤기복	도봉구보건소	"	도봉구보건소	"
명정임	"	"	"	"
변명옥	"	"	"	"
하영해	"	"	"	"
홍영숙	은평구보건소	"	은평구보건소	"
김용순	"	"	"	"
김현자	서대문구보건소	"	서대문구보건소	"
정재숙	"	"	"	"
이순자	"	"	"	"
권순옥	마포구보건소	"	마포구보건소	"
오소혜	"	"	"	"
윤희자	"	"	"	"
김약덕	강서구보건소	"	강서구보건소	"
김용혜	"	"	"	"
정해현	"	"	"	"

성명	발령부서	직급	현부서	직급
문경숙	강서구보건소	지방보건기원보시보 (행정)	강서구보건소	지방간호보조원
유창희	구로구보건소	"	구로구보건소	"
조명애	"	"	"	"
임문희	"	"	"	"
신복순	영등포구보건소	"	영등포구보건소	"
권영자	"	"	"	"
조옥희	"	"	"	"
김순희	동작구보건소	"	동작구보건소	"
전순분	"	"	"	"
정정화	관악구보건소	"	관악구보건소	"
민임준	"	"	"	"
김정임	"	"	"	"
이양순	강남구보건소	"	강남구보건소	"
한기옥	"	"	"	"
최점하	강동구보건소	"	강동구보건소	"
이말남	"	"	"	"
조명자	근로청소년회관	"	근로청소년회관	"
유한규	동부병원	지방보건기원보시보 (엑스선)	동부병원	지방의료기사
이유상	서대문병원	지방보건기원보시보 (병리)	서대문병원	"
김미령	동부병원	지방보건기원보시보 (불리)	동부병원	"
김영현	영등포병원	"	영등포병원	"
홍경자	아동병원	"	아동병원	"
박행자	"	"	"	"
고창진	"	"	"	"

제 1054 호 시

보 1984.12.29 33-33

◎ 1984년 12월 31일자

령제 49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손정운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용산구사회복지과	지방별정직 8급상당

서울특별시